

#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고배당기업으로 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인 세제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우대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Value-up)」을 통해 공시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기업의 배당정책·자본배분 전략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핵심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본 제도는 2026~2028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초기 공시의 완성도에 따라 시장 신뢰도, 투자자 평가, 향후 Value-up 전략의 방향성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104의27)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적용함
- 해당 분리과세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시적 제도로,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현행 종합과세 체계로 복귀 예정임

### 고배당기업 기준

- ①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 ②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25% 이상 & 이익배당금액이 전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
  - \* 투자전문회사,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동 법 개정 취지인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를 고려하여 고배당기업에서 제외

### 배당소득 범위: 현금배당액(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모두 포함)

### 배당성향 산정방법

기준	산식	적자배당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현금 배당총액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25%로 간주(전년 대비 배당 10% 증가 필요) (예외)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 200% 초과인 경우 배당성향 0%로 간주

### 분리과세 세율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2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 조세특례제한법(§104의27)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토록 위임한바 있으며,
-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 방법 및 절차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 이에 대상 요건을 갖춘 기업은 **관련 공시서식 작성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필요**
-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의 방법을 따르되, 시행 첫해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공시도 허용

### ■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공시방법

구분	내용
공시기한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공시 위치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 <a href="https://filing.krx.co.kr">https://filing.krx.co.kr</a> )
공시 내용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 *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및 전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르며,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및 기재상 유의사항 등 참고 가능
공시 첫해 약식공시 허용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 * 공시는 간소화하나,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위한 목표 수립 필요



이와 더불어 2026년 2월 25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안에,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실행방법으로써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요구사항과 컴플라이언스 환경에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업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삼일PwC 밸류업 지원센터

삼일 PwC는 업계 최초로 밸류업지원센터를 출범, 다수 상장사 공시·컨설팅을 수행하며 프로그램 정착을 선도해 왔습니다.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업무 경험에 기반하여 기업의 Real Value up을 위한 최고의 실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밸류업 컨설팅 상담 신청

#### 김용범 Partner

밸류업지원센터장

02-3781-9596

yong-bum.kim@pwc.com

#### 허정 Partner

일본 밸류업 전문가

02-3781-9545

heo.jung@pwc.com

#### 이대희 Director

02-709-8593

dae-hee\_2.lee@pwc.com

#### 박신영 Senior Manager

02-709-8039

shinyoung.y.park@pwc.com